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자료 제공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마크 중복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과 새롭게 규정된 인증마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한 그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령에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을 중기청 단일마크로 통일(안 별표1)

##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해 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02, Fax : 042-472-3287)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제 1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밖에 국제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사업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기술 확산 사업
  3. 중소기업간 국제기술협력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품질인증마크 (제14조의5제2항 관련)</p> 	<p>품질인증마크 (제14조의5제2항 관련)</p> 
<p>1. 이 마크는 제품의 품질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정밀하고 예리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손과 눈으로써 형상화한 것이다.</p> <p>2. 마크의 손모양은 청색으로 하고, 눈모양은 녹색으로 한다.</p>	<p>1. 이 마크는 사람이 머리 위로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p> <p>2. 왼쪽 연두색의 태극형태는 공정한 국가를, 오른쪽 파란색 두 개의 형태는 각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p>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 2(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제 1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사업</li> <li>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기술 확산 사업</li> <li>3. 중소기업간 국제기술협력 사업</li> <li>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